

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0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558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 종결 2021. 6. 17.

판결 선고 2021. 7. 1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558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377,78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148,000,000원'을 '148,5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D'을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를 '제1심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로 고치고, 제5행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을 제1 내지 6, 10 내지 21호증'을 "을 제1 내지 6, 10 내지 21, 24,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를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앞서 든 증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5,1740,000원'을 '51,74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 8행의 '2020. 9. 10.부터 2020. 11. 11.까지 사이에 J에게 위 채무인수금 중 합계 2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를 '2020. 9. 10.부터 2020. 12. 31.까지 J에게 위 채무인수금 4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그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에 근접한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점'을 '그 기계기구의 감정가액 757,212,000원의 73%에 상응하는 대금 559,475,000원(= I에 지급한 대금 63,500,000원 + H에 지급한 대금 79,475,000원 + J에 지급한 대금 400,000,000원 + 수변전설비 공사대금 16,5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1,170,000,000원'을 '1,176,0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별지